

제217회 거창군의회(정례회)
제 2 차 본 회 의 (2016. 6. 27.)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목 차

1	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
2	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-----	4

[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6. 5. 30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6. 5. 3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6. 27.

2. 개정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 및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완화 사항 조례반영으로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

3. 주요골자

- 가.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(안 제9조)
- 나.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문 삭제(안 제26조)
- 다.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 완화(안 제50조제2항, 제54조제2호)
- 라.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(안 제53조제2항제3호)
- 마.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건폐율 완화(안 제53조제5항)
- 바. 일반주거지역 내 떡·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(안 별표 3)
- 사.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(안 별표 18)
- 아. 야영장 시설 입지 가능 용도지역 확대(안 별표 3 ~ 별표 5, 별표 7,

별표 10, 별표 12, 별표 14, 별표 15, 별표 18, 별표 20, 별표 22)
자.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등 변경함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2015. 12. 15, 2016. 2. 11, 2016. 3. 22)사항 및 용도지역내 입지 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완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
- 안 제9조와 안 제26조는 상위법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상 불필요한 조문에 해당되어 삭제하고,
- 안 제26조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3조에서 허가 취소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불필요한 조문에 해당되어 삭제하고,
- 안 제50조 제2항, 안 제53조 제2항 제3호, 제53조 제5항, 안 제54조 제2호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고,
- 기타 개정 조례안들은 상위법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및 별표 개정에 따라 시설 입지가능 용도지역 확대로 토지 효율성 증대, 지역경제발전 기여 및 민원 해소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
-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,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자: 생략

6. 토론요자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자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 요자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6. 5. 30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6. 5. 3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6. 27.

2. 개정이유

- 49개 기초자치단체와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참여를 통한 업무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- 가. 목적(안 제2조)
- 나. 기능(안 제3조)
- 다. 구성(안 제4조)
 - 1) 협의회는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,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
 - 2)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

라. 임원(안 제5조)

- 공동회장(상임회장 1인 포함) 3명, 부회장(권역별) 10명 이내

마. 임원의 임기(안 제6조)

- 임원의 임기는 2년,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

바. 회의 및 의결(안 제7조)

사.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(안 제12조)

아. 자문위원(안 제13조)

자. 분과위원회의 설치(안 제14조)

차. 실무협의회(안 제15조)

- 1)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
- 2)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함

카. 사무국(안 제16조)

타. 경비부담(안 제17조)

-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함

파. 효력발생(안 부칙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49개 기초자치단체와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하였으며 마을만들기 협의회 참여를 통한 업무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

-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까지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1조까지 규정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안을 고시코자 하는 것으로
-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상위법령,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